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96호
- 발의자 : 이소라 의원 등 18명
-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II. 제안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항목 변경과 평생교육시설 이용자의 배상책임 보장을 상향하고자 함.
- 다양한 연령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학교평생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제10조제6항 신설)
2. 재난안전법을 반영해 평생교육기관 1인당 배상금액 1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제15조)
3. 학교 평생교육의 학교시설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6조)
4.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평생교육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함(제17조 신설)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명칭 학습비를 '운영비'로 변경함(제18조)
6. 평생교육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학력보완교육 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규정 신설(제19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평생교육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별첨)
3. 입법예고 : 2025. 10. 28. ~ 11. 1. (의견 :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이소라 의원 등 18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3196호로 공동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학교평생교육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근거를 명시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검토(안 제10조제6항)

- 안 제10조제6항은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과 다

1)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양성을 확보하고 편향된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상 재규정하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 및 운영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관련 검토(안 제15조)

- 안 제15조제1항제1호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0년 6월 9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총괄·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였고²⁾,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1년 6월 10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난 등으로 발생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사망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 (생략)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12. (생략)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2.~6. (생략)

7.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생략)

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³⁾.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표현상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령상 표기와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1.5억'을 '1억 5천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학교의 평생교육 관련(안 제16조제3항)

- 안 제16조제3항은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의 주체가 되는 평생교육기관을 명확히 하고,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제명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 우선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학교의 평생교육을 위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2~3. (생략)
- ② (생략)

4)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그러나 현행 조례는 ‘학교의 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학교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기준을 두고 있어,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의 평생 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한계가 있습니다⁵⁾.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1항에 따라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 할 경우’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유형의 학교 평생교육 운영 방식을 포괄하여 학교시설 관리·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2025년 5월 15일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립학교’ 명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로 일괄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 중 인용 조례명을 정비하는 것 또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학교평생교육위원회 관련(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학교평생교육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평생교육위원회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 및 학부모,

5) 제16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학교의 장 또는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교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11명의 위원이 평생교육의 방향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위원회로,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⁶⁾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설치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동 조례안에서 제시된 위원회의 역할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정책 방향’, ‘세대별·계층별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학교의 평생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평생교육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비추어 볼 때, 동 위원회를 ‘학교평생교육위원회’로 명명하는 것은 그 기능과 명칭이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평생 교육자문위원회’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현행 조례상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약칭 “위원회”)’ 및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약칭 “지역위원회”)’ 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규로 규정하는 위원회는 위원회명을 명시해야 하나,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단순히 ‘위원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와 법체계 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안 제17조제3항의 ‘위원회’는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바 ‘평생교육자문위원회’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전체 또는 특정 분야의 서울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하는 위원회이며, 각종 위원회는 개별 법령 및 자체 계획 등에 의해 설치되어 심의나 자문 등을 위해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의미함.

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관련(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 중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학습비’를 ‘운영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⁷⁾,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조례 제17조⁸⁾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학습비’, ‘교직원 인건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24년 11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지원의 측정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규정되었고, 이는 재정 수요 산정 단계에서 사용되는 법령상 용어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정립됨을 의미합니다.

[표-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발췌)⁹⁾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가. 인건비	교원 수 및 사무직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소속 교원 수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소속 사무직원 수
	나. 운영비	평생교육시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

- 7)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8) 개정조례안 상에서는 안 제17조(학교평생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라 기존 17조가 18조로 변경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개정 2024. 11. 5.>

- 따라서 보조금 지원 범위를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수정하여 규정함은 법령상 용어 체계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의 한계를 넘지 않으므로 용어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관련(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교육감에 등록한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현행 「평생교육법(이하 “법”)」 제20조의2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¹⁰⁾. 한편 이에 따른 세부 지원항목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12조의6각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¹¹⁾.

10)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본조신설 2016. 5. 29.]

11) 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법령상 경비 지원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부가 발행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¹²⁾’에서 시·도교육청의 책무 및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무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조례상 지원 근거를 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¹³⁾.
-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법 제20조의2가 신설된 2016년 이후로 매년 학력미인정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2025년 12월 현재 관내 6개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표-2] 서울시교육청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보조금(운영비·인건비) 지원 이력¹⁴⁾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 원 금	573,874	605,545	631,030	644,195	657,070	703,063	943,669	1,009,724	1,046,556	1,143,997
대상기관수	3	4	4	4	4	4	5	5	5	6

- 단, 기존에는 「평생교육법」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규정되고 있었으나, 「장애인평생교육법」 신규 제정(2025년 11월 11일 제정, 2027년 5월 12일 시행)으로 인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 법률로 분리되고 부칙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법 중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삭제됩니다¹⁵⁾.

1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2021.6.30.)

13) 더욱이,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평생교육법상에서는 지원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명시함.

※ 장애인평생교육법[시행 2027. 5. 12.] [법률 제21076호, 2025. 11. 11., 제정]

제1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확충 및 인력 배치 등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 ‘2025년 학력미인정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추가 지원 계획(안)’ (평생교육과, 2025.7.)

- 따라서 법 시행시 근거 법령 변경으로 조례상 인용되는 조문이 달라지는바, 향후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조례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 10. 30.).¹⁶⁾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박소현(2180-8265)
----------	----------------	-------	----------------

-
- 15)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③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9조 각 호의 사항
제15조제1항 전단 중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3항 중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을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 16)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 10. 30.)

관 계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3. 4. 1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 2027. 5. 12.] [법률 제21076호, 2025. 11. 11., 제정]

제1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도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3항에 따른 폐쇄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장애인에게 학위 취득, 학력 보완 및 학교교육에 준하는 기회 제공과 자립생활·취업 및 고용 유지를 위하여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의사소통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관련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을 갖출 수 있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확충 및 인력 배치 등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3항에 따른 폐쇄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